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종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392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2.

발 의 자 : 윤종군・정준호・김병주
김우영・소병훈・한창민
남인순・김주영・김남희
차지호・서미화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차요금 감면체계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영주차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50% 감면하도록 하고,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・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형자동차 및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1항 후단, 제19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4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이 경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
제19조의3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
제21조의 제목 중 “융자”를 “융자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(이하 “노외주차장관리자”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<후단 신설>	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. 이 경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<단서 삭제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3(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)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	제19조의3(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

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<후단 신설>	----------. 이 경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1조(보조 또는 융자) ① ~ ③ (생 략)	제21조(보조 또는 융자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